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3가단504179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장기윤

피고 1. A

2. B

3. C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알파

담당변호사 문성현

변론 종결 2024. 9. 13.

판결 선고 2024. 11. 15.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6,576,478원과 그중 72,709,088원에 대하여 2022. 12. 16.부터 2023. 5. 23.까지 연 7%,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22. 7. 4.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피고 A과 피고 C 사이에 2022. 6. 6.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3. 피고 B은 원고에게 17,503,421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여신거래약정과 신용보증약정 및 보증채무의 이행

1) 피고 A은 2020. 9. 25.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여신금액 50,000,000원, 여신개시일 2020. 10. 13., 여신기간 만료일 2025. 10. 13.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2020. 10. 13. 원고와 사이에 피고 A이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하여 D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할 채무에 대하여 보증원금 50,000,000원, 보증기한 2025. 10. 13.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은 2020. 10. 20. D은행과 사이에 여신금액 40,000,000원, 여신개시일 2020. 10. 21., 여신기간 만료일 2025. 10. 21.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2020. 10. 13. 원고와 사이에 피고 A이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하여 D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할 채무에 대하여 보증원금 40,000,000원, 보증기한 2025. 10. 21.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제1, 2신용보증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와 피고 A은 피고 A이 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의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은 보증채무이행금,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곧 갚기로 약정하였다.

4) 피고 A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행받은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2022. 8. 17. 대출원금 72,467,160원의 상환을 연체하여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5) D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사고 발생사실을 통지받은 원고는 2022. 12. 16. D은행에,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금 39,980,160원과 이자 462,267원 합계 40,442,427원,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금 32,487,000원과 이자 406,771원 합계 32,893,771원 총 73,336,198원을 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6)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제1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346,920원, 제2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280,190원 합계 627,110원을 회수하여 보증채무 이행금 잔액은 72,709,088원(= 보증채무 이행금 73,336,198원 - 회수금 627,110원)이 되었고,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지급할 법적 절차비용 등 부대채무금은 3,867,390원이며, 구상채권액의 합계는 76,576,478원이다.

6)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구상금에 관하여 정한 연체이율은 연 7%이다.

나. 근저당권설정계약

1) 피고 A은 2022. 7. 4.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이하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7. 5.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29385호로 피고 B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 A은 2022. 6. 6.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8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2. 7. 7.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2978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A의 재산상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은 가액 906,868,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고, 소극재산은 D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 원금 72,467,160원(= 39,980,160원 + 32,487,000원), E에 대한 채무(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채무) 172,500,000원, F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원금 270,000,000원(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12,000,000원으로 설정등기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40,000,000원과 그 외 대출금채무 30,000,000원), 피고 C에 대한 차용금채무 675,000,000원, 피고 B에 대한 차용금채무 450,000,000원이 있었으며, 소극재산의 합계액이 1,639,967,16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와 배당

-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23. 3. 30. 근저당권자 F조합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위 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2024. 3. 6. 매각대금 454,366,000원에 매각되었고, 2024. 5. 8. 위 매각대금에서 이자를 더하고 집행비용이 공제된 실제 배당할 금액 448,733,225원 중 신청채권자인 근저당권자 F조합에 277,343,566원을, 근저당권자 피고 B에게 171,389,659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 3) 원고는 2024. 5. 8. 가압류채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B에 대한 배당금 171,389,659원 중 91,437,300원에 대하여 이의하였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가압류채권액 72,709,088원에 대하여만 이의가 받아들여지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이의는 각하되었다. 피고 B은 배당금 171,389,659원에서 원고의 이의가 받아들여진 72,709,088원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금 98,680,571원(= 171,389,659원 - 72,709,088원)을 수령하였다.
- 4) 원고는 2024. 5.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가단15768호로 피고 B을 상대로 위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금을 98,680,57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금을 72,709,088원으로 경정하는 취지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 내지 13호증, 을나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H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으로 원고에게 76,576,478원과 그중 보증채무 이행금 72,709,088원에 대하여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일인 2022. 12. 16.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3. 5. 23.까지

약정이율인 연 7%,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피보전채권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킨 2022. 8. 17. 피고 A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이하 '이 사건 사전구상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사해행위취소에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1항의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전구상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피고 A의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이 사건 사전구상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가까운 장래인 2022. 8. 17.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사전구상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전구상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들 중 일부인 피고 B, C에게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채무자인 피고 A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 B, C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병합하여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가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에 이미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방법으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배당으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49783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중 보증채무 이행금 72,709,088원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은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피고 B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으로 수령한 98,680,571원 중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구상금채권액인 법적 절차비용 등 부대채무금 3,867,390원과 보증채무 이행금 72,709,088원에 대한 2022. 12. 16.부터 2023. 5. 23.까지 연 7%, 그다음 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4. 9. 13.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3,636,031원[= 2,217,129원{= 72,709,088원 × 159일(2022. 12. 16.부터 2023. 5. 23.까지)/365일 × 연 7%} + 11,418,902원{= 72,709,088원 × 479일(2023. 5. 24.부터 2024. 9. 13.까지) × 연 12%}, 원미만 버림]의 합계 17,503,42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재은

별지